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인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상수도 시설의 증설에 따라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상수도사업소 기구·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798명 → 807명 (증 9명)
- 집행기관 : 780명 → 789명 (증 9명)
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※ 신규정원 승인 내역

구분	계	일 반 직					연구사	기능직	비고
		소계	5급	7급	8급	9급			
정원	9명	7	1	2	1	3	1	1	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지 방 자 치 법

제 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4조 (표준정원의 책정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·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 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시설의 증설에 따라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상수도사업소 기구·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기 관련조례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